

제6장 질의 응답

Questions and answers

그동안 의편집 출판윤리위원회에서 받은 질의에 대하여 현재 국제사회에서 규범으로 자리 잡은 출판윤리지침에 따라 답을 한 것이다. 많은 내용은 학술지 발행 단체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면 충분하다. 즉, 윤리는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이므로 과거의 윤리가 지금 반드시 통용되는 것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지금 사회적인 합의에 따른 윤리나 규범이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또한 윤리는 법과 구별하여 전문가 사회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패러다임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즉, 윤리 문제를 법 문제로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윤리 위반과 범법 행위는 선을 그어야 한다. 학술지 투고자, 심사자, 편집인과 같은 전문가의 모임에서는 전문가직업의식(professionalism)을 잘 지켜 전문가 집단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질의 내용을 중복출판 여부, 이차출판, 중복출판 관련 시안 및 발견 뒤 절차, 저자됨, 기타 시안 순으로 나열하였다.

1. 중복출판 여부 decision of duplicate publication

1) 일부 같은 대상 다른 주제 발표 (duplicate sample and different outcome)

1. 첫 논문 제목은 ‘폐포자충에 감염된 환자에 대한 항균제 및 항원충제 효과의 비교’이며, 국내학술지에 게재하였다. 두 가지 항균제와 한 가지 항원충제의 치유효과를 관찰한 결과 두 가지 항균제 중 한 종이 치유 효과가 가장 좋았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논문은 제1저자, 책임저자가 같으며 제목은 ‘폐포자충에 감염된 환자에 대한 항원충 제제 효과의 비교’로 동일 국내학술지에 1개월 뒤 투고하였다. 환자를 두 군으로 나누어 첫 논문에서 사용한

항원중제 가운데 한 종과 또 다른 한 종의 항원중제를 투여하고 감염 치료효과를 관찰하여 그 중 한 종이 치유 효과가 더 좋았다는 내용이다. 이 두 논문은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중복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법은 동일하나 사용된 약제가 동일성이 없음. 한 논문은 한 주제만을 다루는 것이 원칙이므로 두 개의 논문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중복출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과거 다른 과에서 증례보고한 세계적으로 희귀한 사례를 다른 병원 다른 과에서 수술 소견 추가하여 다시 투고하였다. 투고하면서 과거 이미 보고한 증례를 인용하지 않았다. 이 경우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중복출판이다. 수술 소견을 추가하여 투고한 논문에 과거 증례보고한 진단명이 나오고 같은 환자의 사진이 나온다. 또한 이미 보고된 증례가 있다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그 증례가 없는 것처럼 하고 투고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 만약 이 증례에서 수술 방법이나 소견이 매우 특이한 것이어서 반드시 보고할 필요가 있다면 addendum이나 단보로 처리하여 과거 어느 논문에서 보고한 증례이나 어떤 사유로 수술 소견만 추가한다고 하면 편집인이 유용성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대규모 과제 결과 보고 (reports from large scale project)

3. 큰 과제의 연구를 진행하다보니 결과물의 양이 커서 한 개의 논문으로 작성하기에는 페이지 수가 지나치게 많아질 것이다. 다행히 내용을 두 개로 분리하여도 각각이 충분히 논문형태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 나누어 출판하는 것이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중복출판 여부는 편집인이 결정하므로 협의가 필요하다. 첫째는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한 개의 논문으로 허락을 받고 두 개의 논문을 만들어도 되는지, 또는 중간보고 과정에서 허락을 얻었는지의 문제. 둘째는 분절출판 여부는 해당 학술지의 편집인이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두 논문의 원고를 동시에 한 개의 학술지에 제출하고, 나누게 된 경우서를 함께 제출하면 편집인이 내용을 검토하여 합칠 것인지, 나눌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시기를 다르게 제출하거나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려면 그 사실을 두 번째 학술지 편집인에게 알리거나 논문에서 공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36개월 동안 병원 전산 자료를 수집하여 당뇨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보고서 내용 가운데 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내원한 당뇨병 외래환자의 현황에 대한 분석과 ② 2006년도 당뇨병 초진환자를 대상으로 12개월간 경과 관찰하여 약물 순응도를 본 것과 ③ 2006년도 당뇨병 초진환자를 대상으로 2년간 경과 관찰하여 약물 순응도에 따른 약물재투여 여부를 조사한 것 등 모두 3개 자료를 각각 별개 논문으로

출판 가능한가? ④ 또한 논문을 출간한 후 연령대별로 분석을 할 경우 선행연구를 본문에 밝히고 출판이 가능한가?

①의 경우는 대상과 주제가 다르므로 문제없다. ②를 출판한 뒤 ③을 출판하고자 할 때, ③의 논문의 대상 및 방법에 ② 논문이 포함한다는 것을 밝히고 ②를 참고문헌에 인용하면서 ③을 투고한 학술지 편집인에게 이 사실을 밝히는 절차를 밟아 출판 가능하다. ④는 분절출판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에 논문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역시 투고할 학술지 편집인에게 상황을 밝혀 허락하면 출판 가능하다.

3) 초록 이용 (use of abstract)

5. 우리 학회에서 회원이 해외 저명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 여러 회원들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초록을 학술지에 게재하고 시상을 하는 제도가 있다. 국제학술지의 동의 없이 초록 전재 가능한가?

가능하다. 초록은 각종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 다른 학술지의 논문 중에서 초록만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무방하다.

6. 우리 학회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논문을 다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하여도 되는가?

가능하다. 심포지움에 발표한 초록이나 proceeding인 경우 타 학술지에 원저로 발표가능하다. 다른 학회 학술지에 투고할 때 각주에 '이 논문의 주요 요지는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학회 심포지움에서 발표하였음' 이라는 구절을 포함시킬 것을 권장한다.

7.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초록을 우리 학술지에 번역하여 소개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4) 대중 매체 게재 (publication from mass media)

8. 어느 일간지에서 학술대회 발표 논문 중 하나를 기사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였다. 이 일간지에 기사로 나간 뒤 학술지에 게재하여도 중복출판에 해당되지 않는가?

중복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간지는 학술지가 아니기 때문에 중복출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전문가 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검증된 지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사가 끝나고 학술지에 게재된 후에 사회에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지 공중보건학 측면에서 대중에게

빠른 시일 안에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논문 게재 전이라도 가능한 한 빨리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학위논문 이용 (use of dissertation)

9. 학위논문 내용을 다시 논문으로 출간하는 것은 가능한가?

가능하다. 학위논문을 다시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중복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위논문은 심사과정은 있으나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에 포함되고, 같은 부서의 교원 및 친밀한 외부인사로 심사진이 구성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전문가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많은 대학은 검증을 위하여 정상적인 전문가심사를 거치는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의무화 하거나 권장하고 있다. 학위논문은 학술지에 게재됨으로서 비로소 전문가가 인정한 논문이 된다.

10. 석사 혹은 박사 학위를 취득할 때 논문을 작성하는데 학위가 나오기 전에 타 학술지에 게재하여도 혹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중복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위논문으로 학위 취득과 그 논문의 학술지 출판은 중복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학위 수여 전 논문 게재의 적합성 여부는 대학의 방침이 우선한다. 학위 수여 후 게재는 모든 대학에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여 전 논문 게재는 대학에 따라 정책이 다를 수 있다. 또한 학술지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학위논문인지 고려할 필요가 없다.

2. 이차출판 secondary publication

11. 정부의 지원을 받아 두 학회에서 공동 작업한 ‘폐결핵 진단 및 치료지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지침을 국내학술지에 발표하려고 한다. 두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두 종에 국문으로 양쪽 편집인의 허락 아래 동시에 게재 가능한가?

가능하다. 독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동시게재이다. 단, 학술지에 게재할 때 같은 내용을 동시에 게재한 것임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12. 국제학술지에 영문으로 발표 후 이 논문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국내학술지에 다시 발표할 수 있는가?

언어가 다르고 독자층이 다른 경우 이차출판이 가능하다. 단 양쪽 편집인의 허락을 사전에 받아야 하며, 최소

일주일 이상 투고일에 간격을 두고, 내용은 똑같아야 하고, 제목이나 각주에서 이차출판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독자층과 언어가 달라 이차출판하는 것은 학술지를 대부분 누리집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고 또한 연구자 대부분이 영문 해독에 어려움이 없는 현실에서 효용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충분하다.

13. 우리 학회에서 기존의 국문학술지 외에 영문학술지를 별도로 창간하였으나 2년 후 투고 원고 부족으로 폐간하였다. 당시 이 학술지에 게재하였던 영문논문을 저자가 승인하는 국문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는가?

이차출판 가능하다. 동일 기관에서 발행하는 다른 공식학술지에 이차게재의 형식으로 출판하는 것이 가능하다. 논문을 변경하지 않고, 폐간된 학술지의 서지정보 즉 학술지명, 권, 호, 페이지를 기술하여 이차게재임을 밝혀야 한다.

3. 중복출판 관련 사안 및 중복출판 발견 뒤 절차 issues related to duplicate publication and the process

1) 표절 (plagiarism)

14. 학위 논문 내용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학위 수여자를 공저자에서 제외한 것은 표절인가?
편집인이 상황을 보고 판단할 내용이다. 이때 우선 저자됨(authorship)에 대한 검토부터 선행되어야 하는데, 저자됨은 의평협 출간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과 ICMJE의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의 저자됨의 기준을 참고하여 판단하면 될 것이다. 저자됨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면, 이에 따라 이차적으로 표절 문제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2) 원문 재이용 (text recycling)

15. 자신의 논문 중 같은 부분을 인용할 때 어떻게 하여야 중복출판을 피할 수 있는가?
인용할 때 과거 논문의 내용임을 밝혀야 한다. 자기표절(self-plagiarism)이라고도 하지만 이 용어는 적절치 않고 '원문재이용(text recycling)' 이 더 적절한 표현이다. 자신의 논문저작권이 그 학술지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논문이라도 같은 내용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인용절차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6. 학회가 주관한 교과서 개정판 저자명에서 제외된 초판 집필자가 자신이 집필한 특정

장(chapter)이 개정판에서 의학용어만 의사협회 용어집 새판 용어로 바뀐 채 다른 저자 이름으로 거의 그대로 실린 것을 발견하여 학회에 연락하였다. 표절인가?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대개 모든 저자는 저작권을 학회에 이양하므로 학회가 개정판을 내면서 원문재이용한 것이다. 원문재이용은 자기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에서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교과서 개정판을 낼 때 모든 내용이 한꺼번에 바뀌는 경우는 드물고, 특히 주요 표나 그림은 그대로 전체하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은 학회가 가지고 있어서 개정판에서 초판 내용을 그대로 실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문제는 없다. 만약 해당하는 장에 개별 집필자의 이름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교과서 저자명을 특정 분야 기술에 대한 설명 없이 기술하였다면 개정판 특정 집필자가 작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문제가 없다. 교과서 개정판에서 저작권자가 같은 경우 또는 저작권자가 바뀌어도 사전 협의하여 저작권을 이양하였다면 원문재이용은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해당하는 특정 장을 새 집필자가 기술한 것으로 표기하였다면 조금 다르다. 초판 집필자의 저작 인격권은 저작권 이양을 하여도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라면 학회는 원문재이용을 지적한 초판 집필자와 사전에 협의하지 못한 것을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 방지를 위한 교과서 집필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독립하여, 저작재산권의 양도 후에도, 저작자는 저작물의 저작자라고 주장할 권리 및 이 저작물에 관련하여 그의 명예나 명성을 해치는 왜곡·절단·기타 변경 또는 기타 훼손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3) 중복출판 발견 뒤 절차 (procedure after detection of duplicate publication)

17. 중복출판 논문을 발견하였을 때, 학회에서 취하여야 하는 처리 지침은?

의면협 출간고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참조한다. 의면협 누리집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또는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에서 게재 전후에 중복출판을 의심할 때의 조치를 모형도로 그린 flow chart를 참조할 수 있다(<http://www.publicationethics.org/>).

18. 과거에는 우선 국내학술지에 국문으로 출판하고, 같은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영문으로 투고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현재 중복출판이 출판윤리 위반으로 잘 알려졌다. 과거 국문과 영문으로 두 학술지에 중복출판한 논문을 현 시점에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중복출판이 발견된 경우 의면협이 2008년 발행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편집인이 적절히 처리하면 충분하다. 연구윤리에서 특정 논문에 대하여 논의하는 검증시효일을 출판물이 마지막 나온 날부터 5년 후로 잡는다. 출판윤리 역시 넓은 범위에서 연구윤리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현 시점부터 5년 전의 내용은 각 기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는 다루지 않으므로 학술지에서 다룰 지는 편집인이 검토하여 정하면 충분하다. 만약 중복출판을 모두 찾아서 처리한다면 나중에 출판된 논문 또는 게재승인 일자가 늦은 논문을 대상으로 게재철회 기사를 실을지 고려하고 관련된 다른 학술지 편집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저자됨 authorship

19. 제1저자 2명 이상 가능한가?

가능하다. 학회의 정책에 달려 있으므로 편집인의 결정하면 충분하다. 제1저자 2명이 연구의 준비, 진행, 논문작성, 투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저자됨의 요건을 갖추고, 그 논문의 공저자들과 협의하여 정하면 된다. 학술지에 따라서 편집정책으로 제1저자를 1명으로만 정하는 경우는 그렇게 따라야 한다.

20. 책임저자 2인 이상이 가능한가?

편집인이 정한다. 국제적인 추세는 책임저자 수를 1인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많은 국내외 학술지도 그런 정책을 따른다. 그러나 학술지에 따라 2인 이상인 경우를 인정하는 예도 있으므로 편집인이 정하면 충분하다.

21. 의평협이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학술지 또는 학회 누리집에 전재 가능한가?

가능하다. 출처를 명기하여 옮겨 실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누리집에는 굳이 별개 구성보다 학회 누리집에서 의평협 누리집으로 하이퍼링크(hyperlink)로 연결시키면 간단하다.

5. 기타 etc.

1) 게재철회 (retraction)

22. 게재철회를 저자가 자진해서 신청할 수 있는가?

편집인에게 신청하여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편집인이 게재철회를 할 수 있다.

2) 선취권 (priority)

23. 국제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에서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아 원고 수정하여 발송하고 3개월이 지나도 회신이 없어 같은 수정한 논문을 국내학술지에 투고하였다. 국내학술지에서는 2주 만에 게재 결정되었다. 출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국제학술지에서 채택 통보가 와서 국내학술지 편집인에게 논문 투고 철회(withdrawal)를 요청하였다. 이 경우 편집인은 투고 철회를 받아들여도 되는가?

투고 철회는 편집인이 결정한다. 중복투고 후 두 학술지에서 모두 채택된 경우이다. 채택은 국내학술지가 먼저이지만 선취권은 접수일이 우선하기 때문에 국제학술지가 갖는다. 심사 중인 논문이 확실하게 게재 불가

판정난 것이 아니므로 결과를 사전에 문의하고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고 싶으면 먼저 투고한 국제학술지에 투고 철회를 신청하여야 한다. 출판 전 게재 취소는 가능하다. 그러나 중복투고를 금지하는 투고규정을 위반하였고, 심사위원, 편집위원의 수고를 거쳐 채택되었기 때문에 '중복 투고'에 따른 학회 차원 제재를 고려할 수 있다.